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산단 입주 중소 · 중견기업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
■ 김원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336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원이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4. 9. 26.
3. 회부연월일 : 2025. 10.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공장·사업장 등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권고할 수 있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또는 기술의 이용·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전기 발전사업자가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외 글로벌기업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2050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겠다는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을 선언하면서 국내 납품 기업들에 제도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요구함에 따라 재생에너지 수요는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높아 중소·중견기업이 전력시장에서 재생에너지를 구매하여 사용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큼.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중견기업이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을 확대하려는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중견기업이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의3 신설).¹⁾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27조의3(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입주한 다음 각 호의 기업이 사용하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정부조직개편('25.10.)에 따라 개정안의 내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RE100²⁾을 선언한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은 부품·소재 등을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으나, 중소·중견기업들이 전력시장 등에서 재생에너지를 구매하여 사용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큰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중견기업이 자신의 사업에 사용할 전기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지원 기준·내용·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확대하려는 산업단지 입주 중소·중견기업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면, 중소·중·견기업의 비용 부담이 완화되어 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울러 산업단지 전력계통 보강 등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전력 수요지 중심으로 수용성을 확보한 재생에너지 확대 기반을 구축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글로벌 기업의 RE100 동참 요구 증가에 따라 국내 제조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으로, 산업

2) 205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자는 자발적인 캠페인으로 2014년 CDP(영국 소재 민간단체) 주관으로 시작됨. 2024년 10월 현재 433개의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고 있음.

단지내 기업뿐만 아니라 산업단지에 입주하지 않은 기업의 자가용 전기 생산을 위한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대해서도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임.

참고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재 동 법 제27조(보급사업)³⁾를 근거로 산업단지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 중임(아래 표 참조).

[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 현황]

연도	예산(단위:백만원)	사업수행기관	주요내용
2025년	▶ 168,212(보조) ▶ 426,300(융자)	한국에너지공단	▶ (보조) 주택, 건물, 지역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를 지원 ▶ (융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를 장기·저리 융자지원
2026년	▶ 214,332(보조) ▶ 648,000(융자)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보급사업)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적용사업 및 시범사업
 2.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集積化團地) 및 시범단지 조성사업
 3.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4. 실용화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
 5.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비인증을 받거나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그 부품의 공용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 개선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할 수 있다.

문 의 처
02)6788-5533